

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재진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 외 44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- 최근 학교 등의 급식종사자에게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이 빈발하고 있고, 이에 따라 산재 신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 산재 신청자들은 그 원인을 조리 중에 발생하는 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, 2022년 11월 교육청 등이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,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약 20%가 폐질환, 60여 명은 폐암 의심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등 집단급식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

- 따라서 본 조례는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와 시장의 지원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실내

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또한 「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」로 변경하고자 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시장의 책무와 함께 시민의 책무 규정을 신설(안 제4조)하였으며,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규칙 수립에 관한 사항규정 신설(안 제5조)하였습니다.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(안 제6조)하였으며,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이 유지·관리·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관리규정을 신설(안 제9조)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